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관리 매뉴얼

2026. 07.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개요	1
I. 용어의 정의	4
II. 통합관리제 시행기관의 지정	5
[참고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개발 목적기관이란?	7
[참고 2]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기관 전산시스템 구축요건	9
III. 통합관리제 적용 범위	10
IV. 통합관리계정의 개설·운영	12
V. 통합 연구시설·장비비의 계상·지급·적립	14
VI. 통합 연구시설·장비비의 사용(집행)	18
[참고 3] ZEUS 국가연구시설·장비 정보 연계	22
VII. 통합관리기관 관리·감독	23
VIII. 통합관리기관 지정 취소	26
IX. 기타 관리	29
붙임.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관련 규정	32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개요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관리 매뉴얼

국가연구시설·장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를 도입합니다.

국가연구개발과제 재원으로 도입하였거나 국가연구개발과제에 활용된 연구장비를 연구개발기간 종료 이후에도 유지·보수하며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연구시설·장비, 구축보다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 연구시설·장비의 운영·활용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유지·보수비를 확보하지 못해 활용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란 무엇인가요?

- 국가연구개발과제(이하 “과제”)로 지원된 연구시설·장비비(유지·보수비)를 별도 개설한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계정’에 적립하고, 연구개발기간 내에는 물론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에도 연구시설·장비 유지·보수 필요시, 적립한 비용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 또한,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 단위별로 해당 연구자가 수행하는 과제의 연구시설·장비비를 통합하여 적립,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통합관리계정으로 적립된 연구시설·장비비는 전문기관의 연구개발비 정산 대상에서 제외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에서 별도 모니터링합니다.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도입**

- 여러 과제의 연구시설·장비비가 한 계정으로 통합(개인/목음 단위)
-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 계정으로 이체된 금액은 연구비 정산 면제
- 과제 종료 후, 수리 시 활용

I 용어의 정의

■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 국가연구시설·장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 제13조 제4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 제2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이하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장의 규정에 따라, 과제 종료 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시설·장비비의 일부를 적립 및 통합관리하여 유지·보수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비용
 - (적립 대상) 과제의 연구개발비와 혁신법 제4조 제1호에 따른 기본사업비 중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서 정하는 비용*
 - * 과제의 연구개발비의 경우,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8조 제2호에 따른 연구시설·장비 임차비 및 제8조제3호에 따른 연구시설·장비 운영비가 적립 및 통합관리 가능하고, 혁신법 제4조 제1호에 따른 기본사업의 연구개발비의 경우, 연구시설·장비 유지·보수비가 적립 및 통합관리 가능
 - (사용 대상) ① 과제 재원으로 구축되었거나 ② 과제 외의 재원으로 구축된 후 과제 수행에 활용되었음이 확인되는 연구시설·장비(‘VI. 통합 연구시설·장비비의 계상·지급·적립’ 참고) 중에서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이하, “ZEUS”)에 등록된 연구시설·장비

■ 통합관리계정

- 통합관리제 운영에 필요한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를 적립하여 지속 사용하도록 연구개발기관에서 개설·관리하는 계정

■ 통합관리 단위

- 통합관리제 운영에 필요한 계정의 설정 단위를 말하며, 연구책임자 단위, 공동활용시설(연구개발기관의 조직 또는 부서 단위로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를 집적하여 운영하는 시설) 단위, 연구개발기관 단위로 구분

■ 통합관리계정 책임자

- 적립된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를 직접적으로 관리·사용하는 통합관리 단위별 계정의 책임자

■ 기타 필요한 용어

용어	상세설명	참고규정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지급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기관에게 협약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비를 지급하는 행위	제19조
사용/집행/지출	통합관리계정 책임자가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를 실제 유지·보수비로 사용하거나, 연구개발기관의 지원부서가 사용처에 대금을 납부하는 행위	제8조, 제23조
적립(통합관리)	연구개발기관이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를 자체 통합관리계정으로 이관하여 통합관리하는 행위	-

II 통합관리제 시행기관의 지정

■ 참여 조건

-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장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제도 운영 가능

※ 단, 연구개발기관의 기본사업비 중 연구시설·장비 유지·보수비를 통합관리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은 혁신법 제4조 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이어야 함

*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어 정관에 따른 설립목적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연구개발사업(기본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함

① 자체장비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② 연구시설·장비비의 통합관리가 가능한 자체 연구비관리시스템 운영

※ 각 통합관리 계정은 자체연구비관리시스템을 통해 적립 및 사용내역 확인 등이 가능하여야 함

③ 비영리연구개발기관 중 다음 요건 중에 하나를 충족하는 기관

- 혁신법 제25조*에 따른 연구지원체계평가 결과 B등급 이상(단, 지정을 신청한 날로부터 최근에 실시한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함)

* (혁신법 제25조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제24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구지원 체계 구축·운영에 대한 평가(이하 “연구지원체계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목적기관
- 연구개발기관 내 연구지원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동시에 전문기관의 연구개발비 통합관리시스템(통합Ezbaro 또는 통합RCMS)과 연계되어 있고, 최근 2년 간 참여제한 통보 또는 환수처분 내역이 없으며, 기관 내부 연구윤리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기관(단, 연구지원체계평가 결과 C등급 이하인 기관은 해당 요건이 충족되어도 신청 불가)

※ 지정 요건은 지정 신청 공고 시 일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연도 지정 신청 공고 참고

■ 신청절차

-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은 ZEUS를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지정신청서와 자격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할 수 있는 아래의 관련 서류 및 그에 따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①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기관 지정 신청서
 - ② 최근 3년간의 자체장비심의위원회 구축·운영 실적 증빙자료
 - ③ 연구시설·장비비의 통합관리가 가능한 자체 연구비관리시스템 증빙자료
- 비영리연구개발기관 중 혁신법 제25조에 따른 연구지원체계평가 결과 B등급 이상이 아니면서 연구개발목적기관에도 해당되지 않는 기관인 경우에는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①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지원시스템 구축 여부 및 전문기관의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과의 연계 증빙자료
 - ②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관리 규정(연구윤리에 관한 자체 규정이 별도로 마련된 경우, 해당 규정)

참고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개발 목적기관이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1. 공기업·준정부기관: 직원 정원, 수입액 및 자산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2. 기타공공기관: 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 이외의 기관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른 법률에 따라 책임경영체제가 구축되어 있거나 기관 운영의 독립성, 자율성 확보 필요성이 높은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기관의 성격 및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타공공기관 중 일부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기타공공기관의 지정기준)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기타공공기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
3. 그 밖에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기관

⇒ 위 조항에 따른 연구개발 목적기관은 결산, 경영실적, 감독 등의 검토 권한을 기획재정부 또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담당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제출자료를 검토하고 신청기관이 자격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 시행기관으로 지정함
- 연구시설·장비비의 통합관리 및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사용은 지정 기간 시작일로부터 가능함
 - ※ 신청 후 지정 완료까지 기한은 약 3개월 소요 예정



[그림 1]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지정절차

Q. 통합관리기관이 되면 반드시 통합관리해야 하나요?

▶ **모든 연구책임자가 연구시설·장비비를 통합관리해야 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원하는 연구책임자만 통합관리할 수 있습니다.

▶ **모든 과제의 연구시설·장비비를 통합관리해야 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연구책임자가 통합관리 여부를 선택하면 됩니다.

▶ **모든 부처의 과제에서 연구시설·장비비의 통합관리가 가능한가요?**

- 그렇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부처의 과제에서 연구시설·장비비를 통합관리할 수 있습니다. 단, 수익창출활동을 통한 자립 운영을 전제로 지급되는 연구시설·장비비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외될 수 있습니다.

(상세설명은 ‘Ⅲ. 통합관리제 적용범위’ 참고)

참고2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기관 전산시스템 구축요건

구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1. 통합 연구시설· 장비비 계정 관리	가.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총액관리	• 해당기관의 통합 연구시설·장비비의 수입/사용/잔액 현황 총괄 관리 기능 • 최근 5년간 수입 총액 대비 사용 잔액비율 관리 기능
	나. 통합관리계정 설정	• 통합관리 단위별 계정 설정 기능(연구개발기관 단위, 공동활용시설 단위, 연구 책임자 단위) • 과제 정보(부처·과제명 등) 및 과제별 적립, 지출 현황 관리 기능
	다.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잔액 관리	• 계정별 통합관리비 잔액 현황 모니터링 화면 제공(제도담당부서 담당자는 기관 전체 계정 총괄/계정별 조회, 계정책임자는 관리 중인 계정 총괄/계정별 조회)
	라. 통합관리계정 적립 잔액 한도 관리	• 적립잔액 한도초과 사전 방지 기능(한도 초과 시 적립 불가 기능 필수, 한도 80, 90% 적립 시 알림 기능 권장)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승인 시 한도 증액 관리 기능(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승인을 받은 경우, 한도 증액 처리 및 증빙 관리)
2. 통합 연구시설· 장비비 사용관리	가.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지급대상 관리	•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사용 시, 비용 지출 발의자와 승인자가 기관 내 R&D 재원의 ZEUS 장비 확인(지출 대상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기관의 연구비관리 시스템과 ZEUS API 연계 권장) • 통합관리비 사용 용도를 유지·보수, 임차·사용, 이전·설치로 구분하여 해당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관리
	나.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지급절차 구현	• 적절한 지급 절차 구현(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사용 발의(계정책임자) → 사용 승인 및 집행(담당지원부서))
	다.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지급현황 관리	• 통합관리 계정책임자 및 제도담당부서 담당자가 계정별 지급 내역 조회(지급 대상 연구시설·장비 ZEUS 등록번호, 사용액, 사용처 및 사용일, 증빙서류)
	라.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부당집행 관리	• 부당집행 사전 방지 기능(용도 외 사용 방지, 타 계정 회수 사용 방지 등,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기관 내 제도 안내 및 홍보 권장)

III 통합관리제 적용 범위

■ 정부수탁사업

-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지원한 연구시설·장비의 성능 유지에 필요한 유지·보수비 등을 통합관리 가능함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8조 제2호, 제3호 용도에 해당)
 - ※ 수익 활동을 통한 운영 자립을 전제로 지원되는 연구시설·장비비 등 통합관리가 적절치 않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는 적용 제외
 - ※ 연구시설·장비 작동(활용)에 소요되는 공공요금, 연료비 등 제외

Q. 수익 활동을 통한 운영 자립을 전제로 지원은 무슨 의미인가요?

- ▶ 본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는 국가연구시설·장비의 유지·보수비 단절을 대비하고자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분석료 수입 등을 통하여 향후 자체 운영비를 확보하도록 연구시설·장비의 구축을 지원한 일부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연구개발비는 통합관리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각 소관 부처에서 판단하여 협약 시 통합관리 가능 여부를 결정합니다.

■ 연구개발기관 기본사업(기관고유 등)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지원하는 기본사업비 중 연구시설·장비의 유지·보수비를 통합관리 가능함

Q. 연구개발기관의 기본사업비 중 연구개발 장비·시스템 구축비도 통합관리가 가능한가요?

- ▶ 아닙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연구개발기관의 기본사업비 중 연구개발 장비·시스템 구축비(360-04목)는 예산의 목적이 시설·장비 구축이므로 **통합관리**하여 유지·보수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계상 및 **통합관리** 대상이 아닙니다.

〈표 1〉 정부수탁사업 연구개발비 세목·용도별 통합관리 적용 구분

사업	비목	세목	사용 용도 (장비 관련)	적용 구분	
정부 수탁 사업	직 접 비	연구시설 ·장비비	해당 과제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1-1. 구입·설치비(부대비용 포함) 1-2. 성능 향상비	과제에 활용	통합관리 불가
			해당 과제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2-1. 임차비 2-2. 유지·보수비 2-3. 연구장비 이전·설치비	과제에 활용	통합관리 가능
			3. 연구장비 개발 경비	개발 목적	통합관리 불가
			4. 연구 인프라 구축사업비 (부지, 시설, 장비 구축비 등)	인프라 확충	통합관리 불가
		연구활동비	2. 공공요금		통합관리 불가
			4. 시험분석료		통합관리 불가

〈표 2〉 연구개발기관 기본사업 세목별 통합관리 적용 구분

사업	목	세목	적용 구분	
연구개발기관 기본사업	연구개발출연금*	연구개발 장비·시스템 구축비 (360-04)	과제에 활용	통합관리 불가
		연구개발활동비 (360-05)	과제에 활용	통합관리 가능

* 연구개발 출연금(360목) : 정부 R&D사업으로서 지원되는 출연금

※ 연구개발기관 내 연구개발비의 비목은 〈표 1〉의 정부수탁사업 연구개발비를 준용함

IV 통합관리계정의 개설·운영

■ 통합관리계정의 설정

- 통합관리기관은 연구책임자, 공동활용시설, 연구개발기관 단위의 계정설정이 가능하며, 통합관리 단위는 상호 중복 운영이 가능
 - 연구책임자는 연구의 목적, 규모에 따라 통합관리 단위를 선택하여 연구시설·장비비를 통합관리 할 수 있음
 - 통합관리기관의 담당지원부서는 연구책임자의 신청을 통해 통합관리 단위별 계정을 설정하고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를 관리·사용함
 - ※ 통합관리기관은 연구책임자 단위로만 통합관리계정을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며, 연구개발기관/공동활용시설/연구 책임자 단위의 계정을 모두 운영하는 것도 가능함
 - ※ 적립되는 통합관리 단위의 적절성 여부는 자체장비심의위원회를 통해 조정할 수 있음



[그림 2]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 단위

Tip. 공동활용시설 단위로 통합 관리하면 이런 점이 좋습니다.

공동활용시설이나 연구개발기관과 같은 묶음 단위로 통합관리하는 경우, 개인단위로는 부족한 유지·보수비를 확보 할 수 있으며 기관의 지원금(교비, 간접비 등), 공동활용시설의 수익금 등의 기타 기관 재원으로 보충할 수 있습니다.

- 연구책임자의 시설·장비 운영 여건에 따라 통합관리 단위를 결정하고 계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으며, 통합관리계정은 단위별 적립 한도를 준수하여야 함

- 공동활용시설, 연구개발기관의 규모·운영 특성을 고려하여 한도를 증액하고자 하는 통합관리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 필요(연구책임자 계정의 한도 증액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한적 허용 예정)

* 적립한도 증액 신청서 양식은 붙임의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전문 중 [별지 제14호 서식] 참고
※ (필요 증빙서류) 신청 계정의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적립·사용 내역

〈표 3〉 통합관리단위별 적립(통합관리)한도

통합관리 단위	상세 내용 (운영사례)	적립한도 (1계정 당)
연구책임자	연구 몰입 등을 위해 연구자별 단독 활용이 존중되어야 하는 경우	3억 원
공동활용시설	대학의 학과, 연구개발기관의 부서/센터, 특성화된 공동활용 연구지원시설 등 공동활용 시설·장비의 집적화와 통합운영이 효율적인 경우	7억 원
연구기관	공동활용시설 단위의 운영이 비효율적인 소규모 기관이거나 연구책임자·공동활용 시설 단위의 통합관리계정이 중단*된 경우 * 연구책임자의 연구중단(사망, 이직 등) 또는 공동활용시설의 폐쇄 등	10억 원

[참고] 연구시설·장비의 유지·보수비와 적립한도

- ▶ 선행연구*에 따르면, 연구시설·장비의 유지·보수에는 취득가액의 10~26%(10년 가정)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일반) KBSI(2015), 노후 연구장비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가과학기술연구회
* (대형) OECD GSF(2010), Large Research Infrastructure
- ▶ '15~'17년, 가장 많은 연구시설·장비를 구축한 9대 연구개발기관(출연연 3개, 대학 3개, 특정연 3개/ZEUS 등록기준)의 3개연도 연구시설·장비 정보를 분석한 결과, 1인의 연구자가 연간 평균 약 3점, 구축총액 평균 약 3억 원의 장비를 구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단일 연구시설·장비의 취득가액은 10억 원 이하가 90.3%로 나타났습니다.
- 대형연구사업과 연계되어 있는 사업단을 별도 분석한 결과, 연평균 연구시설·장비 구축비가 약 50~70억 원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 ▶ ZEUS의 연구시설·장비 정보와 유지·보수비 소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취득가액의 10~26% 수준에서 적립한도를 설정하여 안정적인 연구시설·장비의 운영·활용을 도모하였습니다.

■ 자체장비심의위원회의 역할

- 통합관리기관의 자체장비심의위원회는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음
-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의 자체 운영규정 마련 또는 운영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 필요 시, 통합관리계정의 한도를 고려한 적립금액의 적절성과 연구시설·장비의 운영현황 등을 검토하여 연구책임자/공동활용시설/연구개발기관 단위의 통합관리계정(분할적립 등) 조정 가능
※ 단, 분할적립 시 관리·점검을 위한 적립·사용내역 증빙 관리 철저 필요

V 통합 연구시설·장비비의 계상·지급·적립

■ 통합 연구시설·장비비의 계상

- 과제에 활용할 연구시설·장비의 유지·보수, 임차·사용, 이전·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연도별 연구개발비 중 수정직접비**의 10% 이내로 통합관리(계상·지급) 가능

*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8조 연구시설·장비비 사용용도 제2호, 제3호에 해당

** 과제의 직접비 중 '현물 부담액'과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한 직접비를 의미하며, 연구개발기관의 기본사업비의 경우, 직접비에서 '연구개발 장비·시스템 구축비'도 제외

[근거규정]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01조

제101조(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의 설정) 제100조제3항에 따라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시설·장비비(이하 “통합연구시설·장비비”라 한다) 관리를 위한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하나 이상의 연구개발과제의 통합연구시설·장비비를 통합관리할 수 있다. 다만, 수익창출활동을 통한 자립 운영을 전제로 지급되는 연구시설·장비비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제8조제2호에 따른 연구시설·장비 임차비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연구시설·장비 운영비
2.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기본사업의 연구개발비 중 연구시설·장비 유지·보수비

〈표 4〉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8조 연구시설·장비비 사용용도 제2호, 제3호

세목	사용용도(제8조)	사용기준(제23조)
연구 시설· 장비비	1. 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구입·설치비, 관련 부대 비용, 성능향상비 2. 연구시설·장비 임차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임차비 3. 연구시설·장비 운영·유지비: 유지·보수비, 운영비 또는 이전설치비(연구시설·장비를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전받거나 같은 기관 내의 공동활용시설로 이전·설치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4. 연구인프라조성비: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인프라 부지·시설의 매입·임차·조성비, 설계·건축·감리비 또는 장비 구입·설치비(후략)	①~⑤ (생략)

- 연구책임자는 과제/연구개발기관 기본사업에 참여 시, 통합관리 여부와 통합 연구시설·장비비의 계상 여부, 연도별 계상금액을 결정함

- 정부수탁사업은 전문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를 확정하고, 연구개발기관 기본사업은 최초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시 기재된 금액으로 자체장비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함

- 전문기관은 정부수탁사업 과제 계획에 제시된 연구시설·장비비의 통합관리 적정성 여부를* 확인 후 협약

* 통합관리 적용 여부(기관/사업) 및 지급한도

〈표 5〉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세목 및 계상액 산정을 위한 직접비 여부

비목	세목				산정 대상 직접비 여부	합계
직 접 비	인건비	내부 인건비	지급	현금	○	
				현물	×	
		외부 인건비	지급	현금	○	
				현물	×	
	학생인건비				○	
	연구시설·장비비		일반	현금	○	
			특례	현금	○	
			현물		×	
	연구재료비				○	
	연구활동비				○	
	연구수당				○	
	보안수당				○	
	위탁연구개발비				×	
	국제공동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부담비				×	
	직접비 소계				-	
	간접비				-	
	연구개발비 총액				-	
미지급 인건비				-		

※ [혁신법 시행규칙 별지1호 서식] 연구개발계획서 참고

※ (음영)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산정 대상 직접비 해당 세목

- ‘(기준이 되는) 수정직접비’ 및 ‘통합 연구시설·장비비의 지급한도(수정직접비의 10%)’는 협약 시
또는 협약 변경시 산정함

※ 최초 협약에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협약서를 따름

※ 통합관리기관 지정시, 당해년도 진행 중인 연구 과제의 경우, 협약 변경을 통해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산정
가능

[예시] 통합 연구시설·장비비의 지급한도

구분		최초협약	변경	비고
협약일		2021.1.1.	2021.3.1.	
총 연구개발비		6억 원	6억 원	
직접비	현물부담액, 위탁연구개발비 등	2억 원	1억 원	1억 원 감액
	수정직접비	3억 원	4억 원	1억 원 증액
간접비		1억 원	1억 원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지급한도		0.3억 원	0.4억 원	0.1억 원 한도 증가

Q. 위탁연구개발기관은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가 불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위탁연구개발비로 연구를 수행하는 통합관리기관은 위탁연구개발비를 전체 연구개발비로 간주하여 연구시설·장비비의 일부를 통합관리할 수 있습니다.

- 통합 연구시설·장비비의 계상은 소속 과제와 별도로 산정하여 계상합니다.
즉, 위탁연구개발비에서 수정직접비의 10% 이내를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로 계상하여 적립 가능합니다.

■ 통합 연구시설·장비비의 적립

- 통합관리기관은 협약이 완료된 연구개발계획서에 근거하여 신청(연구책임자)-확인(담당지원부서) 절차를 거쳐 통합관리계정*에 적립
 - 수정직접비 총액의 10% 이내로 적립하되, 계정별 적립한도(Ⅳ. 통합관리 계정의 개설·운영 참고)를 준수하여야 함
 - * 통합관리 계정으로의 과도한 적립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통합 단위별 적립한도액을 차등 설정
 - 통합관리기관은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전체 또는 일부 지급받거나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를 변경하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기관의 통합관리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적립기한 내 이체하지 않은 경우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를 반납하여야 할 수 있음
 - ※ 위탁연구개발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위탁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적립
 - ※ 연구개발기관 기본사업의 경우에는 기관 내에서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를 최초 확정된 시점으로부터 90일 이내 적립
 - ※ RCMS 과제의 경우에는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시점을 RCMS 시스템 상에 과제 계정이 개설된 시점으로 보아, 과제 계정이 개설된 시점으로부터 90일 이내에 통합관리계정으로의 적립을 완료하여야 함
 -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는 통합관리기관 내 다수의 통합관리계정으로 분할 적립할 수 있음. 단, 적립하고자 하는 통합관리계정은 해당 연구책임자 계정,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부서(대학의 경우, 과 또는 단과대)의 공동활용시설 또는 구축·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공동활용시설의 계정, 연구개발기관의 계정으로 제한됨
 - 전체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는 협약종료일(다년도 협약 과제의 경우 해당연도 협약종료일)까지 이체 완료하여야 함
 -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하여 적절한 내부규정을 마련한 후 기타 기관 지원금(교비, 간접비 등), 운영·활용 과정에서의 시설·장비 이용료 수입 등 추가 적립 가능
- 전문기관은 과제 정산 시, 통합관리기관으로 지급된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적립기한 준수 여부 및 지급 한도 초과 여부를 관리
 - ※ 통합관리기관으로 지급된 금액의 적정성은 확인하되, 연구개발기관에서 통합관리 후 사용된 내역 정산은 면제
 - 전문기관은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를 통합관리계정으로 적립기한 내 이체하였음을 확인하는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적립기한 내 이체하지 않은 경우 또는 사전승인 없이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를 변경한 경우 등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가 확인될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반납 요구 가능(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80조 제2항 관련)

VI 통합 연구시설·장비비의 사용(집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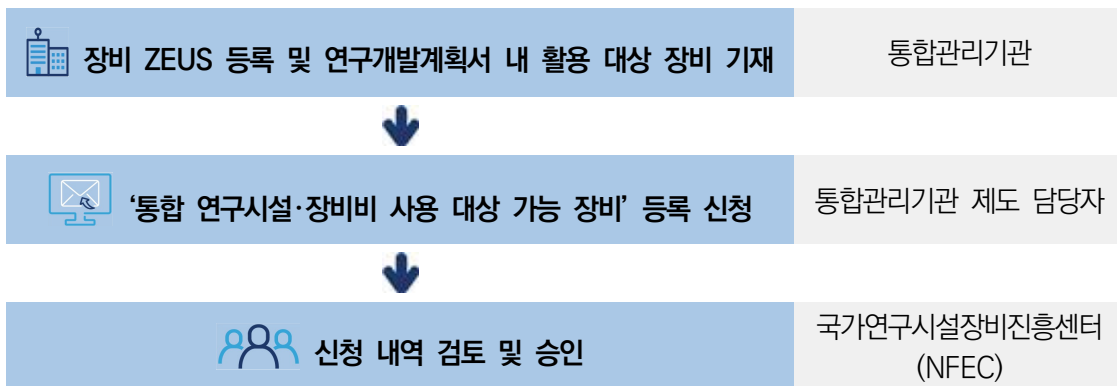
■ 통합 연구시설·장비비의 용도

-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는 해당 통합관리기관에서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되었거나 ② 그 외의 재원으로 구축된 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활용되었음이 확인되는 연구시설·장비 중에서 ZEUS에 등록된 연구시설·장비를 위해 사용할 수 있음

- ZEUS에 등록한다면 3천만 원 이하의 연구장비도 유지·보수 등에도 사용할 수 있음(연구시설·장비의 취득가액과는 무관)

- 비R&D 재원으로 구축한 장비도 ① ZEUS에 등록한 이후 ②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장비를 활용 대상 장비로 명시한 경우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를 사용할 수 있음*

* 비R&D 재원으로 구축한 장비에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통합관리기관 제도담당 부서에서 ZEUS 등록 여부, 과제계획서에 활용 대상 장비로 명시하였는지 여부를 모두 확인한 후, 등록된 장비 정보(ZEUS 등록번호)와 증빙서류(해당 장비가 활용 대상 장비로 명시된 연구개발계획서 최종본)를 구비하여 ZEUS를 통해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사용 대상 장비 리스트'로 등록 신청 → NFEC에서는 신청 내역을 검토한 후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사용 대상 장비 리스트' 등록 승인(자세한 등록 매뉴얼은 ZEUS 통합관리제 메뉴-기관별 관리 화면-비R&D장비 탭-매뉴얼 다운로드 버튼 참고)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된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는 '국가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상의 등록기한이 지났더라도 추가 등록은 가능하나, 연구개발기관의 '등록일 평균' 실적에 반영됨을 유의(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된 3천만 원 이하 연구시설·장비, 비R&D 재원으로 구축한 연구시설·장비는 '등록일 평균' 실적 산정과 무관)

〈표 6〉 통합 연구시설·장비비의 사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

재원		ZEUS 등록여부		비고
		ZEUS 등록	ZEUS 미등록	
국가연구개발사업		○	×	• 제도 시행전 구축된 시설·장비 사용가능
연구개발기관 기본사업	연구개발활동비	○	×	
	연구개발장비·시스템 구축비	○	×	
정부 지원 비R&D 구축장비		○	×	• 과제에 활용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사용 가능
기관 자체 구축장비 (교비 등)		○	×	

[대상 시설·장비 정보] ZEUS 정보 연계

- ▶ ZEUS는 ZEUS와 기관 내 시스템을 연동하여 국가연구시설·장비의 정보를 통합관리기관의 자체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3]
- ▶ ZEUS와 정보연계가 된 통합관리기관은 집행 프로세스에서 손쉽게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사용 가능 장비 여부를 확인하고 적절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정보 연계 시, 기관의 자체 시스템에서 ZEUS 등록된 R&D 재원의 연구시설·장비 확인이 가능합니다.

-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는 유지·보수, 임차·사용, 이전·설치비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실비를 사용함

- (유지·보수) 장비의 점검*, 수리*, 장비성능 유지를 위한 품질보증 약정(warranty) 등을 포함

* (점검/수리) 「국가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내 '별표 9 운영유지비 범위'의 유지보수비에 해당하는 비용

〈표 7〉 표준지침 내 유지·보수비의 정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유지 보수비	유지비	• 수선유지비 : 운영연구시설장비의 고장수리, 정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시설장비유지비 : 운영연구시설장비를 이상 없이 유지시키기 위한 점검 등에 소요되는 비용
	교체비	• 부품교체비 : 수명을 초과하거나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장비부품의 교체비용
		• 시설교체비 : 수명을 초과하거나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시설물의 교체비용

- (임차·사용) 성능의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여 기존 임차·사용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사용가능함

※ 계약 이후 소유권이 해당 연구개발기관으로 이전되는 경우는 제외

- (이전·설치) 연구시설·장비의 기관 간 양도 및 기관 내 공동활용시설로 재배치하는 경우 이전과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 단, 연구시설·장비의 기관 간 양도의 경우, ZEUS를 통해 이전 기록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

-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는 각 통합관리계정 책임자가 소요경비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통합관리기관의 담당지원부서를 거쳐 사용함

- * 해당 기관에서 과제 수행 시 해당 용도로 지출할 때 필요한 일련의 서류와 동일하게 서류를 구비하되, 유지·보수인 경우, 부품 단종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성능 향상이 발생한다면 부품단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며, 임차·사용인 경우, 기존 임차·사용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기존 임차·사용 계약서가 필요. 따라서 각 기관의 통합관리제 담당자는 지출 용도 및 상황에 따라 필요한 적절한 서류를 연구자가 구비할 수 있도록 필요 서류 목록 등에 대해 통합관리제 내부 운영규정 등을 통해 규정하고 안내할 것을 권장
- 통합관리 계정의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는 재원에 관계 없이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사용 기준에 의거하여 사용해야 함

Q. 사용(집행)시기나 사용(집행)를 제한은 없나요?

▶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는 과제 종료 후에만 사용 가능한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는 과제 수행 중에도 수리, 이전 등 필요소요 발생 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적절한 유지·보수비를 당해 연도에 모두 사용해야 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적절한 유지·보수비는 과제 종료 후까지 지속사용이 가능하므로 남겨두었다가 수리, 이전 등 소요가 발생 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용(집행)률이 낮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낮은 사용(집행)률은 부당행위 등 관리대상이 아니므로 유지·보수가 필요할 때까지 사용하지 않고 적립 및 지속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계정의 통합관리 단위별 적립한도가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이런 경우에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를 사용할 수 있나요?

▶ 고장난 장비의 부품을 교체하려고 했더니 해당 부품이 단종되어 구할 수가 없는데 더 나은 성능의 부품으로 교체할 수 있을까요?

- 일반적인 경우, 더 나은 성능의 부품으로 교체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연구시설·장비의 성능이 개선된다면 유지·보수가 아닌 성능향상으로 구분되므로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품이 단종되어 동일 성능으로의 유지·보수가 불가능한 것이 명백한 경우, 제한적으로 더 나은 성능의 부품으로의 교체를 인정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의 지출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과 협의해주시고, 기관 내 자체장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출을 최종 승인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비 분실 보험료 납부에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를 사용할 수 있나요?

-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는 유지·보수, 임차·사용, 이전·설치비의 용도로 사용 가능합니다. 이때 유지·보수의 범위에 장비 분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품질유지 약정(warranty)에는 사용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 계정에 있는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로 타 연구책임자가 관리 중인 장비를 수리할 수 있나요?

- 통합 연구시설·장비비의 사용이 가능한 기관 소유의 연구시설·장비라면 어떠한 계정으로 수리하여도 괜찮습니다. 다만, 모든 지출은 해당 계정책임자의 결재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Q.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 ▶ 연구개발기관에서는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개별 과제의 연구개발비 사용 실적 제출 시, 해당 과제의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전액 사용한 것으로 보고합니다.(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04조 제2항)
- ▶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에서는 통합 연구시설·장비비의 사용 적정성에 대하여 정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를 통합관리계정으로 적립기한 내 이체하였음을 확인하는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적립기한 내 이체하지 않은 경우, 승인 없이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를 변경한 경우 등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가 확인될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반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80조 제2항)
- ▶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사용·관리의 적정성은 'Ⅶ. 통합관리제 관리·감독'에 따라 판단합니다.

참고3

ZEUS 국가연구시설·장비 정보 연계

- (목적) 정보연계를 통해 ZEUS에 등록된 국가R&D 재원의 장비를 기관 내 시스템에서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 사용시점에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용도 외 사용”을 미연에 방지
- (대상) 통합관리기관의 자체 시스템과 ZEUS를 연계하여 장비관리 기능 구현을 희망하는 기관(‘국가연구개발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29조에 근거)
 - 과제 기반·연구장비 기반의 연구시설·장비의 등록/수정/삭제 API 등 등록된 장비정보 관리기능 제공

〈표 8〉 정보연계 진행 절차

단계	정보연계 진행 절차	정보연계 준비 과정 및 관련자료
1	정보연계 사전 검토	• 정보연계 신청 전 ZEUS-신청기관 간 관련자료 검토 및 사전협의 진행(정보연계 가이드라인 확인)
2	정보연계 신청서 작성	• 정보연계 신청서 작성 - 등록관리 API 연계기능 제공
3	정보연계 온라인 신청	• ZEUS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 사이트의 API 온라인 신청 - ZEUS 포털 내 소속기관 등록 및 회원가입 후 정보연계 신청 진행 (기관관리자/장비담당자 권한신청) - 신규가입의 경우, 3가지 항목(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을 ZEUS에서 보유 중인 기관정보DB와 비교 후 신규등록 진행 - 시스템 입력 시 기관명과 사업자등록번호는 사업자등록증에 있는 명칭 및 번호와 일치해야 함(특수문자 제거 후 입력)
4	정보연계 신청 승인	• ZEUS의 기관별 승인 후 정보연계 고유 API KEY 발급 - 연계기관 내부시스템과 ZEUS API 연계를 위해 고유 API KEY 사용
5	정보연계 모듈 자체개발	• 연계기관 내부시스템의 연계모듈 자체 개발 진행 - 자체 개발된 연계기관 시스템과 ZEUS API 정보항목 코드 연계
6	정보연계 수정 및 보완	• 정식 서비스 전 내부시스템과 ZEUS API 연계 오류 점검 및 테스트 (정보연계 최종 승인)
7	정식 서비스 시작	• 정식연계 서비스 시작

- ZEUS API 연계주소 : <https://api.zeus.go.kr> (해당도메인 외 사용불가)
- 문의처 :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정책기획실 (T. 042-865-3951)

VII 통합관리기관 관리·감독

■ 통합 연구시설·장비비의 관리와 점검

- 통합관리기관은 자체 연구비관리시스템을 통해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를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함
 - 기관 내 연구비관리시스템을 통해 통합 연구시설·장비비가 용도*에 맞게 사용되도록 관리·감독하고 연 1회 이상 자체점검 하여야 함

*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되었거나 ② 그 외의 재원으로 구축된 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활용되었음이 확인되는 연구시설·장비 중에서 ZEUS에 등록된 연구시설·장비의 유지·보수, 임차·사용, 이전·설치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통합관리기관의 운영현황을 점검 및 관리·감독하고 다음의 자료 제출을 통합관리기관에 요구할 수 있음

- ① 통합관리기관의 자체점검 및 관리 실적
- ②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계정의 세부 통합관리·사용 내역
- ③ 그 밖의 운영현황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제출자료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가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 현장점검은 통합관리기관에 문서로 7일 전까지 통보하는 것이 원칙

[운영현황점검] 관리실적의 보고

- ▶ 통합관리기관은 연 1회 이상 자체점검*의 의무가 있으며, 통합관리·사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통합관리 모니터링시스템(ZEUS)에 업로드 하여야 합니다.

* (자체점검표) 붙임의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전문 중 [별지 제15호 서식] 참고

** 관련 증빙자료는 연구개발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관리하되, 증명자료가 생산된 날이 속하는 다음 연도의 1월 1일부터 5년간 보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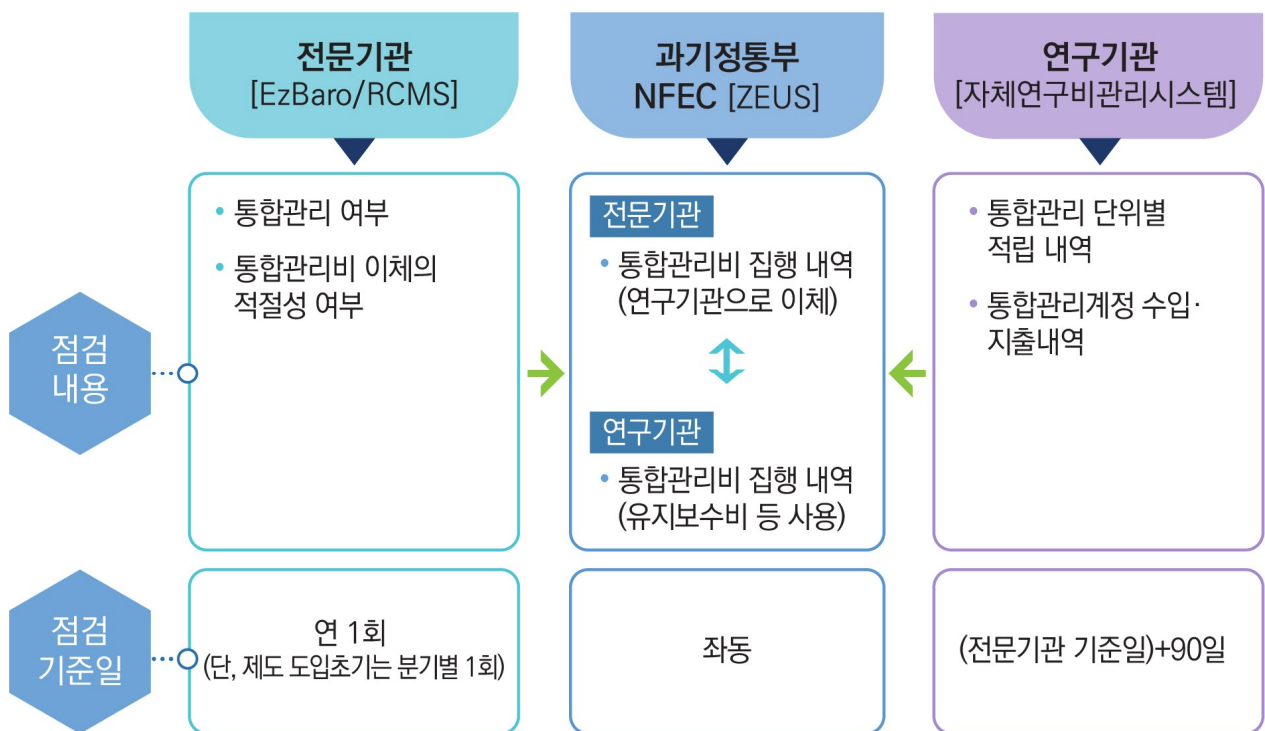
- ▶ 개선 필요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표 9〉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계정의 세부 통합관리·사용 내역

구분	필요 필드값
통합관리내역 (수입)	통합관리계정단위, 연구개발기관명, 연구기관사업자번호, 전문기관명, PMS 과제번호, 연구책임자정보(과학기술인등록번호), 비목, 세목, 통합관리 유무, 적립일자, 적립금액, 거래처명, 거래처 사업자번호
사용내역 (지출)	연구개발기관명, 전문기관명, PMS 과제번호, 통합관리 계정번호, 연구책임자정보(과학기술인등록번호), ZEUS 장비 등록번호, 비목, 세목, 사용용도(임차·사용료, 유지·보수비, 이전·설치비), 거래일자, 금액, 거래처명, 거래처 사업자번호
사용비율	통합관리 계정의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총액, 통합관리 계정의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사용총액, 통합관리 계정의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사용비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06조 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의 장에게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지급내역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 모니터링 개요



※ (점검기준일) 통합관리기관은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전체 또는 일부 지급받거나,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를 변경하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기관의 통합관리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적립기한 내 이체하지 않은 경우,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를 반납하여야 할 수 있음

‘개선 필요사항’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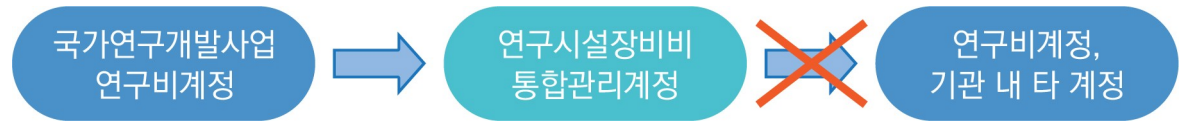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를 정해진 용도 외 사용한 경우, 적립대상이 아닌 연구개발비를 통합관리한 경우, 합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여 사용한 경우 등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를 부적절하게 관리·운영한 경우에는 ‘개선 필요사항’에 해당되므로 통합관리와 사용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① 용도 외 사용 : 운영현황 점검년도를 기준으로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점검대상기간) 중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를 관리지침에서 명시한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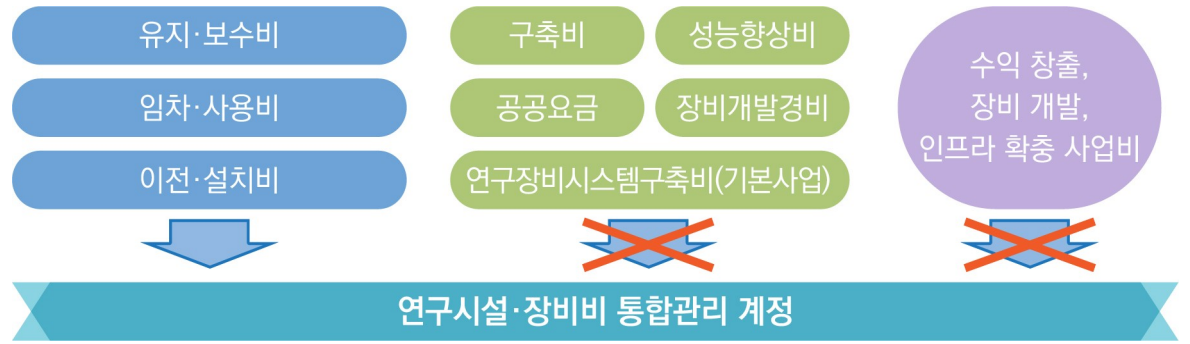
※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한 시설·장비의 임차·사용료는 허용되지 않음(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05조 제1항 제2호)

- ② 부당회수 : 점검대상기간 중 통합관리계정의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를 타당한 이유 없이 통합관리기관 내 타 계정으로 회수한 경우



- ③ 적립한도 초과 : 점검대상기간 중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03조 제1항의 통합관리계정별 적립한도를 초과하여 적립한 경우

- ④ 부당 적립 : 점검대상기간 중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 계상 대상이 아닌 연구개발비를 통합관리한 경우



VIII

통합관리기관 지정 취소

■ 개선요청과 이행결과 보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점검 결과로 개선필요사항 또는 다음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통합관리기관에게 개선을 요청할 수 있음
 - ①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를 자체 연구비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하지 않은 경우
 - ② 자체점검결과 보고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 개선요청을 받은 통합관리기관은 45일 이내에 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ZEUS를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후 6개월 이내에 개선계획에 따른 이행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 붙임의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전문 중 [별지 제16호 서식] 및 아래 ‘기관 내부 개선 조치 가이드라인’ 참고
 - ** 붙임의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전문 중 [별지 제17호 서식]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통합관리기관에서 제출한 개선계획을 검토하여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지정 취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개선요청 이후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통합관리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 ① 보완된 개선계획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이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
 - * 개선계획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완 요청이 충실히 반영되지 않은 경우 등
 - ② 개선계획 이행결과 보고 후 1년 이내에 동일한 개선 필요사항이 반복하여 확인된 경우
- 지정취소 조치를 받은 연구개발기관은 지정취소일 기준 수행 중인 과제의 연구시설·장비비를 제외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잔액을 반납함
 - 지정취소일과 연구종료일이 가까운 과제 순으로 해당 중앙행정기관(또는 전문기관)에 반납

기관 내부 개선 조치 가이드라인

- ▶ ①기관 내 자체장비심의위원회를 통해, ②통합관리계정의 사용 권한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개선 조치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함
 - 단, 별도의 인사 징계가 필요한 사안(횡령 등)에 대해서는 기관 규정(징계규정, 인사위원회규정 등) 및 혁신법에 따라 별도 추가 처리
 - 기관 계정은 내부 개선 조치 대상에서 제외(과기기술정보통신부의 통합관리기관 지정 취소로 접근)
- ▶ 점검대상기간 내 발생한 동일 계정·동일 사유 사안은 1회로 보며, 각 횟수는 사안 발생 보고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소멸되어 횟수에서 차감
- ▶ 적립 관련 개선 필요사항은 사안별 횟수를 병합*하여 제한 조치 부과
 - * 예를 들어, 부당 회수로 1회에 해당하는 ‘경고’ 조치를 부과받은 후 3년 이내에 한도 초과 적립이 있는 경우, 2회에 해당하는 ‘해당 계정 적립 및 사용 중지 1년’ 제한 조치 부과
- ▶ 사용 관련 개선 필요사항은 고의가 아닌 과실이거나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체 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0% 범위에서 중지기간 감경 및 사용금액 회수 면제 가능
 - * 예를 들어, 기관 내 제도담당자에게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사용 가능 여부를 문의하였는데 제도담당자의 실수로 잘못 안내하여 잘못된 용도로 지출한 경우 등 명백한 증거를 통해 과실이었던 것이 확인되거나 참작할 만하다고 합리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구분	개선 필요사항	발생 횟수에 따른 제재 방안		
		1회	2회	3회 이상
적립	부당 회수 (연구개발비 계정, 타 통합관리계정)	경고 및 부당 회수 금액 원 계정 복구	해당 계정 적립 및 사용 중지 1년	해당 계정 적립 및 사용 중지 3년
	계정별 적립 한도 초과 적립	경고 및 초과 적립 금액 기관 계정 이체		
사용	용도 외 사용 (유지보수, 임차사용, 이전설치) 또는 非 대상 장비에 대한 사용	경고 + 사용금액 회수	해당 계정 적립 및 사용 중지 3년 + 사용금액 회수	해당 계정 적립 및 사용 중지 5년 + 사용금액 회수
		※ 단, 고의성이 없고 참작할 만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사용금액 회수 면제 가능		
	횡령 또는 유용	해당 계정 적립 및 사용 중지 5년 + 사용금액 회수	해당 계정 폐쇄 및 계정 잔액 기관 계정으로 이체 + 계정책임자는 제도 활용 불가 + 사용금액 회수 및 기관 계정으로 적립	

예시

지정 취소 시 사용 잔액의 반납

- 지정 취소일 : 2022.1.1.
-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잔액(지정 취소일 현재) : 3,500만 원
-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반납금액 : 2,500만 원
 ∴ 3,500만 원-1,000만 원(현재 수행 중인 A과제의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계상액)
- 반납 대상 과제 처리 순서

과제구분	소관 부처 (전문기관)	연구개발기간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계상금액	반납 금액	반납 대상 기관	비고
A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	2021.7.1.~ 2022.6.30	1,000만 원	-	-	수행 중인 과제는 미반납
B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 평가관리원)	2021.1.1.~ 2021.12.31.	1,000만 원	1,000만 원	한국산업기술 평가관리원	
C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 기획평가원)	2020.7.1.~ 2021.6.30.	500만 원	500만 원	정보통신 기획평가원	
D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20.4.1.~ 2021.3.31.	2,000만 원	1,000만 원	한국보건 산업진흥원	잔액 범위 내만 반납
E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 기술진흥원)	2019.1.1.~ 2019.12.31.	2,000만 원	-	-	

- 반납순서
 - A과제는 현재 지정취소일 현재 수행 중인 과제로 반납 대상에서 제외
 - 지정취소일로부터 종료일이 가장 가까운 B의 과제에서 1,000만 원 반납
(추가 반납필요액 : 1,500만 원)
 - 지정취소일로부터 종료일이 2번째 가까운 C의 과제에서 500만 원 반납
(추가 반납필요액 : 1,000만 원)
 - 지정취소일로부터 종료일이 3번째 가까운 D의 과제에서 나머지 1,000만 원만 반납
(추가 반납필요액 : 0원)
 - E과제는 더 이상 반납할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잔액이 존재하지 않아 반납처리 불필요

IX

기타 관리

■ 통합관리계정의 이관·불용

- 통합관리기관의 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이 변경되고 해당 연구책임자의 통합관리계정에 잔액이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 사용함
 - 공동활용시설 또는 연구개발기관 단위의 통합관리계정은 타 연구시설이나 연구개발기관으로 이전할 수 없음
 - ① 연구책임자가 이직과 동시에 수행 중인 과제를 승계하여 이전하는 경우
 -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과제에서 적립한 연구시설·장비비를 잔여 연구개발기간 비율로 산출하여 변경된 연구개발기관의 통합관리 계정으로 이관하여 사용 가능
 - ② 수행 중인 과제를 승계하지 않는 경우
 - ③ 이직하는 기관이 통합관리기관이 아닌 경우
 - (②, ③) 해당 계정의 잔액을 기존 통합관리기관의 다른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계정으로 이관하여 통합관리하고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용도에 맞게 사용
- 공동활용시설의 운영이 종료되어 통합관리계정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연구개발기관 단위의 통합관리계정으로 이관하여 통합관리하고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용도에 맞게 사용
- 지정의 포기 등 연구개발기관이 통합관리계정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통합관리계정의 잔액을 산출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에게 반납*하여야 함

* 반납 절차 및 금액 산정은 지정 취소 시와 동일

■ 과제의 변경

- 과제의 협약이 해약 또는 중단된 경우(과제 수행기관에서 제외되는 경우 포함)에는 잔여 연구개발기간을 고려하여 통합 연구시설·장비비의 잔액을 산출하여 반납하여야 함
 - 통합관리계정의 잔액 한도 내에서 총 연구개발기간 대비 잔여 연구개발기간에 상당하는 비율로 산출하여 반납(반납할 잔액이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 잔액 한도 내에서 반납)
 - ※ 통합관리단위별 분할적립의 경우, 적립 비율을 고려하여 산출하여야 함

예시. 과제 중단 시 반납

- 협약 해약일 : 2021.7.1. (연구개발기간 : 2021.1.1.~2021.12.31.)
 - 해당 과제의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계상액 : 3,000만 원
 - 반납액 : 1,500만 원
- 단, 연구책임자의 통합관리계정의 잔액이 1,000만 원인 경우, 1,000만 원만 반납

- 과제의 협약 변경을 통해 통합관리기관이 과제 수행기관으로 새롭게 추가되는 경우, 해당 통합관리기관은 지원받은 과제비 내에서 계상한도(수정직접비의 10%) 이내로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계상 가능

■ 통합관리계정의 이자

- 통합관리계정에서 발생한 이자는 통합관리계정에 남겨 연구시설·장비의 유지·보수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함
 - 계정별 이자 산출·관리에 대한 행정 업무 부담이 과다한 경우, 기관 내부규정 마련을 통해 기관 내 통합관리계정의 이자를 연구개발기관 단위 계정 또는 공동활용시설 단위 계정*에서 통합관리할 수 있음. 단, 이때에는 통합관리계정의 이자를 통합관리할 것을 기관 내부 운영규정으로 규정하여야 함
- * 대학 캠퍼스 간 구분, 산학협력단/대학본부 간 구분, 지역본부 간 구분 등을 위해 연구개발기관 단위로 적립하기 어려운 경우를 고려하여 공동활용시설 단위 계정에서도 이자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으나, 공동활용시설 단위 계정으로 통합관리하는 경우에는 기관 조직도 상 하위 단위 계정의 이자만 통합 관리할 수 있음(예를 들어, OO지역본부에 소속된 연구책임자의 계정에서 발생한 이자는 XX지역본부 계정에 통합하여 관리할 수 없음)

〈표 10〉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 절차 개요도

	연구개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 FEC	소관 부처/ 전문기관
지정	① ZEUS 내 지정 신청 - 연 1회	② 자격심사	⑤ 통합관리기관 파악
	④ 통합관리제 기관 지정	③ 지정여부 통보	
과제계획서 작성 및 협약	① (신규) 과제계획서 작성 (기존) 협약 변경 신청 - 연구시설·장비비 내 통합 연구시설· 장비비 계상		② 과제계획서 검토 - 통합관리기관 여부/통합 연구 시설·장비비 지급 적정성 검토 - 부정직접비 10% 이내
	④ 통합계정설정/관리		③ 협약 체결 또는 변경
지급 및 적립	② 연구책임자가 기관 담당 부서에 통합 관리계정 적립 신청		① 통합연구시설·장비비를 연구 개발기관에 지급
	③ 기관 내 계정별 통합연구시설·장비비 (별도 자원 포함) 적립 - 계정별 적립잔액 한도 검토		
사용	① 연구책임자가 기관 담당 부서에 관련 증빙 후 유지보수비 등 사용신청		
	② 기관 담당부서 증빙 검토 후 비용 지급		
모니터링	① 기관 자체 정산/관리 후 사용(집행) 내역 ZEUS 업로드 - 점검일은 “전문기관 기준일+90일” (기관 내 이체시간 고려)	② ZEUS 내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통합관리비 지급내역(전문기관)과 사용(집행)내역(연구개발기관) 교차점검	① 지급내역은 통합 IRIS/EzBaro/RCMS를 통해 ZEUS와 공유 - 연 1회 (제도 도입 초기에는 반기별 1회)
후속조치	③ 과제비→통합 연구시설· 장비비 지급 문제 발생 시 전문기관 조치에 따름 (기준과 동일)		① 과제 정산 시, 통합 연구시설· 장비비 금액의 적정성 확인 및 적립기한·지급한도 초과 여부 관리
	④ 통합관리계정 내 사용(집행) 문제 발생 시 개선요구서 제출 또는 지정취소에 따른 잔액 반납	② 통합 연구시설·장비비의 개선 필요사항이 확인된 경우 개선 요청 또는 지정취소	

붙임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관련 규정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④ 연구개발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고시하는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계상·사용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른 직접비·간접비의 계상한도 및 인정기준, 비용 정산의 방법·절차
2. 연구개발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3.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0조(연구개발비의 사용) ④ 법 제13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학생인건비 사용에 관한 사용 기준
2. 연구시설·장비비 사용에 관한 사용 기준
3. 연구개발비 사용용도별 집행절차

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내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2)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1) 비목별 총괄표

연구개발기관명		연구개발비											미지급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합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 재료비	연구 활동비	연구수 당	위탁연구개 발비			
			일반 ¹⁾	특례 ²⁾	일반 ³⁾	특례 ⁴⁾							
	현금												
	현물												
	소계												
	현금												
	현물												
	소계												
총계	현금												
	현물												
	합계												

* 1」 영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학생인건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생인건비
2」 영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학생인건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는 학생인건비
3」 영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연구시설·장비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연구시설·장비비
4」 영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연구시설·장비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는 연구시설·장비비

4.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의 사용 기준 등 연구개발비에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과제”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중략)

9. “간접비비율”이란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동안의 간접비를 직접비 중 현물 부담액과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한 금액(이하 “수정직접비”라 한다)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중략)

19.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란 연구시설·장비비 관리를 위한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하나 이상의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시설·장비비를 통합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0.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이란 제100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중략)

제8조(연구시설·장비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시설·장비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구입·설치비 및 관련 부대비용 또는 성능향상비
2. 연구시설·장비 임차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임차비
3. 연구시설·장비 운영·유지비: 유지·보수비, 운영비 또는 이전 설치비(연구시설·장비를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전받거나 같은 기관 내의 공동활용시설로 이전·설치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4. 연구인프라 조성비: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인프라 부지·시설의 매입·임차·조성비, 설계·건축·감리비 또는 장비 구입·설치비(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기획, 설계, 건설, 완공 후 운영 등 추진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자문 또는 관리를 수행하는 종합사업관리 추진비용을 포함한다)

(중략)

제70조(연구개발비 사용절차) ①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접비 중 다음 각 호의 사용용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책임자의 발의를 거쳐야 한다.

1. 연구시설·장비비(제101조제1항에 따른 통합관리하는 연구시설·장비비는 제외한다)

2. 연구재료비
3. 연구활동비
4. 연구수당

(중략)

제73조(사전 승인 대상) ① 법 제13조제4항제3호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연구개발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총액을 말한다)을 변경하려는 경우

(중략)

11.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에 적립할 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12.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해외연구자 유치 지원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해외연구자 유치 지원비 총액을 말한다)을 증액하려는 경우(단, 환율의 변동만으로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을 위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 한다.

1.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인 경우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안보 또는 사회·경제적 긴급한 상황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략)

제75조(정부지원금이자 사용용도)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 기간(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로 한다. 이하 이장에서 같다.) 동안 정부가 지원한 연구개발비에서 발생한 이자(이하 “정부지원금이자”라고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국고 또는 해당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 산입

2. 연구개발에 재투자
 3. 연구개발성과의 창출지원, 보호, 활용역량의 강화
 4. 제87조제1항에 따른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에 산입(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에서 발생한 이자만 해당한다)
 5. 제101조제2항에 따른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에 산입(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에서 발생한 이자만 해당한다)
 6.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비(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비에서 발생하는 이자만 해당한다)
 7.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용도
-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발생한 정부지원금이자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제87조제1항에 따른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 제101조제2항에 따른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 및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비에서 발생한 이자는 각각 제1항제4호, 제5호 및 제6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중략)

제80조(연구개발비 정산기준)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비영리기관에 지급된 간접비가 간접비통합관리계정에,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에 지급된 학생인건비가 제87조제1항에 따른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에,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에 지급된 연구시설·장비비가 제101조제2항에 따른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에 기한 내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경우에 해당 연구개발비를 적정하게 사용한 연구개발비로 인정할 수 있다.

(중략)

제7장 연구시설·장비비 사용의 특례

제100조(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의 지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비영리기관을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

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연구개발 목적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거나 제2항에 따라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 지정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최근에 실시한 법 제25조에 따른 연구지원체계평가 결과가 B등급 이상인 기관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7조에 따른 자체장비심의위원회(이하 “자체장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을 것
2. 별표 5의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 전산시스템 구축요건을 만족하는 전산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을 것
3. 연구개발기관 내 예산·협약·정산, 구매·자산·검수, 재무·회계, 성과관리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체 연구지원시스템(이하 “자체연구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이 구축되어 있고, 자체연구지원시스템이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을 것
4. 영 제58조제1항에 따른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고 있을 것
5. 제2항에 따라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 지정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최근 2년 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제재처분 또는 연구개발비 환수처분을 받지 아니할 것

②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자료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 또는 자료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별지 제13호 서식의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 지정 신청서
2. 최근 3년 간의 자체장비심의위원회 구축·운영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연구개발기관의 자체연구지원시스템이 연구시설·장비비를 통합관리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4. 자체연구지원시스템 구축 여부 및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과의 연계 증명자료
5. 영 제58조제1항에 따른 자체 연구윤리규정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서류 또는 자료를 평가하여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을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이를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1조(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의 설정) ① 제100조제3항에 따라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시설·장비비(이하 “통합연구시설·장비비”라 한다) 관리를 위한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하나 이상의 연구개발과제의 통합연구시설·장비비를 통합관리 할 수 있다. 다만, 수익창출 활동을 통한 자립 운영을 전제로 지급되는 연구시설·장비비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연구시설·장비 임차비 및 연구시설·장비 운영비
2.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의 연구개발비 중 연구시설·장비 유지·보수비

②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연구시설·장비비 관리를 위한 계정(이하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이라 한다)을 연구개발기관 단위로 관리하는 연구개발기관계정, 연구개발기관 내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를 집적하여 운영하는 시설(이하 “공동활용시설”이라 한다) 단위로 관리하는 공동활용시설계정, 연구책임자 단위로 관리하는 연구책임자계정으로 구분하여 설정할 수 있다.

③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참여연구원은 통합관리 단위를 선택하여 연구개발기관에 계정 설정을 요청하고,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은 제102조에 따른 내부 운영규정에 따라 적립금액의 적절성과 연구시설·장비 운영현황을 검토하여 적립할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의 단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102조(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 내부 운영규정 마련·운영)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내부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의 자체적인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2.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통합연구시설·장비비의 수입·지출·잔액 관리에 관한 사항
4. 통합연구시설·장비비의 관리를 위한 자체연구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자체장비심의위원회의 역할 및 임무에 관한 사항
6. 제110조에 따른 연구개발기관 지원금과 시설·장비 이용료 수입의 추가 적립에 관한 사항
7.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에서 발생한 이자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3조(연구시설·장비비의 적립) ①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이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계정에 적립할 수 있는 적립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기관의 장이 요청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증액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기관 단위로 설정된 계정: 10억 원
2. 공동활용시설 단위로 설정된 계정: 7억 원
3. 연구책임자 단위로 설정된 계정: 3억 원

②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시에 연구시설·장비비통합 관리계정에 적립할 금액을 연차별 수정직접비의 10퍼센트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 하는 한도 내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결정된 한도를 증액하고자 하는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자료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별지 제14호 서식의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 적립한도 증액 신청서
2. 신청한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의 최근 3년간 적립·사용내역

제104조(연구시설·장비비의 사용) ①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전체 또는 일부 지급받거나 통합연구시설·장비비를 변경하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통합연구시설·장비비를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여야 하며, 해당 연차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전체 금액을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여야 한다.

②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연구시설·장비비를 사용실적보고서등에서 사용된 연구개발비로 본다.

제105조(연구시설·장비비의 지출) ①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연구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ZEUS)에 등록된 연구시설·장비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되었거나 연구개발계획서 상에 명시되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활용되었음이 확인되는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의 통합연구시설·장비비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지출할 수 있다.

1. 연구시설·장비의 유지·보수
2. 연구시설·장비의 임차·사용대차(기존의 임차·사용대차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만 사용 가능하며, 계약 이후 소유권이 해당 연구개발기관으로 이전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연구시설·장비의 기관 간 양도 및 기관 내 공동활용시설로 재배치되는 이전·설치

② 통합연구시설·장비비의 사용 증명자료는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관리하되, 증명자료가 생산된 날이 속하는 다음 연도의 1월 1일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06조(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 점검) ①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제100조부터 제105조에 따라 통합연구시설·장비비가 관리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자체점검 연도를 기준으로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점검대상기간”이라 한다) 중 통합연구시설·장비비를 제105조 각 호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로 지출한 경우
 2. 점검대상기간 중 제103조제2항에 따라 최초로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시에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에 적립하기로 결정한 금액과 다르게 해당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에 적립하였거나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 내 다른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한 경우
 3. 점검대상기간 중 제103조제1항에 따른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별 적립한도(같은 항 단서에 따라 적립한도를 증액한 경우에는 증액한 적립한도를 말한다)를 초과하여 적립한 경우
 4. 점검대상기간 중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 대상이 아닌 연구개발비를 통합관리한 경우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의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 운영현황을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의 자체점검 실적
 2.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의 세부 수입·지출내역
 3. 그 밖의 운영현황 점검에 관한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의 소명자료 등 필요한 자료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자료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하여 자료가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현장점검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현장점검일 부터 7일 전까지 점검 일시·내용 등을 포함한 점검계획을 해당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합연구시설·장비비 지출내역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 운영현황의 효율적인 점검을 위하여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를 추진할 수 있다.

제107조(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 지정취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6조 제1항 및 제3항의 점검결과가 제106조제2항 각 호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에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1. 통합연구시설·장비비를 자체연구지원시스템으로 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06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선을 요구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구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개선계획을 작성하여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을 통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요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개선계획의 이행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개선계획을 검토하여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의 소명을 거쳐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보완된 개선계획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이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
2. 개선계획 이행결과 보고 후 1년 이내에 동일한 개선 필요 사항이 반복하여 확인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 지정이 취소된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 잔액을 지정 취소일과 연구개발기간 종료일이 가까운 연구

개발과제 순으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취소일 기준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의 통합연구시설·장비비는 제외한다.

제108조(연구시설·장비비의 이관·반납) ①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 책임자의 소속 기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통합연구시설·장비비 잔액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한다. 단, 공동활용시설단위 또는 연구개발기관단위의 통합연구시설·장비비는 타 연구시설이나 연구개발기관으로 이전할 수 없다.

1.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 책임자가 이직과 동시에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를 승계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에서 적립한 통합연구시설·장비비를 남은 연구개발기간 비율로 산출하여 변경된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으로 이관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통합연구시설·장비비 잔액을 기존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 내 다른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으로 이관하여 제105조제1항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공동활용시설단위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의 공동활용시설이 폐쇄될 경우 통합연구시설·장비비 잔액은 연구개발기관단위로 통합관리하여야 한다.

③ 법 제12조제3항 또는 제15조제1항을 포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사유로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이 해약되거나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된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 대비 남은 연구개발기간에 상당하는 비율로 연구개발과제의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잔액을 산출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④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 지정을 포기하거나 연구개발기관이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한 사유로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이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액을 산출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09조(연구시설·장비비의 이자 사용)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에서 발생한 이자를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에 적립하여 제105조 각 호의 용도로 지출·관리하여야 한다.

제110조(다른사업수입등의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연구시설·장비의 효율적인 운영·활용을 위하여 간접비(국가연구개발사업이 아닌 사업의 간접비를 포함한다), 교비 등 연구개발기관 지원금과 연구시설·장비 운영·활용에 따른 이용료 수입 등(이하 “다른사업수입등”이라 한다)을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으로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사업수입등을 활용한 통합연구시설·장비비의 지출·관리에 관하여는 제100조부터 제10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111조(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의 연구지원체계평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에 대하여 연구지원체계평가 시에 차등하여 반영할 수 있다.

(중략)

부칙 <제2023-49호, 2023.12.28.>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87조제5항은 2024. 9. 1.부터 시행하며, 제90조 제1항, 제2항, 제3항의 ‘이체’는 2024. 8. 31.까지 ‘이체 또는 계정대체’로 본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표 5] (제정 2021. 1. 1.)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 전산시스템 구축요건 (제100조제1항 관련)

구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1. 통합 연구시설 ·장비비 계정관리	가.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총액관리	• 해당기관의 통합연구시설·장비비의 수입/사용/잔액 현황 총괄 관리 기능 • 최근 5년간 수입 총액 대비 사용 잔액비율 관리 기능
	나. 통합관리계정 설정	• 통합관리 단위별 계정 설정 기능 (연구개발기관 단위, 공동활용시설 단위, 연구책임자 단위) • 연구과제정보(부처·과제명 등) 및 과제별 적립, 지출 현황 관리 기능
	다.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잔액 관리	• 계정별 통합관리비 잔액 현황 모니터링 화면 제공 (제도담당부서 담당자는 기관 전체 계정 총괄/계정별 조회, 계정책임자는 관리 중인 계정 총괄/계정별 조회)
	라.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적립 잔액 한도 관리	• 적립잔액 한도초과 사전 방지 기능(한도 초과 시 적립 불가 기능 필수, 한도 80, 90% 적립 시 알림 기능 권장) • 과기정통부 승인 시 한도 증액 관리 기능(과기정통부 승인을 받은 경우, 한도 증액 처리 및 증빙 관리)
2. 통합 연구시설 ·장비비 사용관리	가.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지급대상 관리	• 통합연구시설·장비비 지출 시, 비용 지출 발의자와 승인자가 지출 대상이 기관 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된 ZEUS 등록 장비임을 확인(지출 대상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기관의 연구비관리시스템과 ZEUS API 연계 권장) • 통합관리비 사용 용도를 유지·보수, 임차·사용, 이전·설치로 구분하여 해당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관리
	나.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지급절차 구현	• 적절한 지급 절차 구현(통합연구시설·장비비 사용 발의(계정책임자) → 사용 승인 및 집행(담당지원부서))
	다.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지급현황 관리	• 통합관리 계정책임자 및 제도담당부서 담당자가 계정별 지급 내역 조회 (지급 대상 연구시설·장비 ZEUS 등록번호, 사용액, 사용처 및 사용일, 증빙서류)
	라.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부당집행 관리	• 부당집행 사전 방지 기능(용도 외 사용 방지, 타 계정 회수 사용 방지 등,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기관 내 제도 안내 및 홍보 권장)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13호서식] 〈제정 2021. 1. 1.〉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 지정 신청서

신청기관	기관명			
	기관구분	☐ 정부출연연 등 ☐ 전문생기연 등 ☐ 대학, 국공립연구소 등 기타 연구개발목적기관 ☐ 기타 비영리기관		
	대표자			
실무연락 책임자	부서명		직 위	
	성 명		연락처	
	FAX		E-Mail	

우리 기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00조제2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 제출서류 :

1. 자체장비심의위원회 운영실적 1부.
2. 자체연구비관리시스템 증빙서류 1부.
3. 연구지원시스템 구축 여부 및 전문기관의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과의 연계 증빙자료 1부(필요시).
4.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관리 규정(연구윤리에 관한 자체규정이 별도로 마련된 경우 해당 규정) 1부(필요시)

년 월 일

연구개발기관장:

(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14호서식] <제정 2021. 1. 1.>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 적립한도 증액 신청서

신청기관	기관명			
	대표자			
신청계정	계정단위	☐ 연구개발기관단위 ☐ 공동활용시설단위 ☐ 연구책임자단위		
	계정번호	기관에서 관리 중인 계정번호 기재		
	계정책임자	계정 책임자 성명 기재		
증액 요청 적립한도	(기존) 00억 원 → (증액) 00억 원 요청하는 증액 한도 기재 (최초 계정단위별 적립한도 내에서 1억 원 단위로 신청 가능)			
한도 증액 요청 사유				
실무연락 책임자	부서명		직 위	
	성 명		연락처	
	FAX		E-Mail	

우리 기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03조제3항에 따라 위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 적립한도의 증액을 신청합니다.

※ 제출서류 : 신청 계정의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비 적립·사용 내역 1부.

년 월 일

연구개발기관장:

(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15호서식] 〈제정 2021. 1. 1.〉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 자체점검표

〈총괄표〉

(단위: 원, %)

연구시설·장비비 총액(A)	사용(집행)한 연구시설·장비비 (B)	사용(집행) 비율 (C=B/Ax100)

〈세부사항〉

○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 자체점검 실적 (전년도 1.1~12.31)

(단위: 원)

점검조치 구분	조치 결정통지일 (공문기준)	조치대상 계정구분	조치대상 계정책임자	조치대상 금액	조치완료여부	비고
용도 외						
회수						
적립대상 미준수						
적립한도 미준수						
합계					(완료건수 기재)	

210mm×297mm [백상지 80g/㎡]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16호서식]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 개선계획서

제출기관	기관명			
	대표자			
개선 요구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선 요구’ 공문에 제시된 ‘개선요구사항’ 기재			
개선계획-1 (계정 제한 조치)	조치 대상 계정	계정 제한 조치 대상 계정번호 기재		
	계정책임자	계정 제한 조치 대상 계정책임자 성함 기재		
	부과 조치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관리 매뉴얼 내 ‘기관 내부 개선 조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통합관리기관의 자체장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조치 기재		
개선계획-2 (개선요구사항 반영 및 재발 방지 방안)	개선요구사항에 대한 반영 계획 및 동일 개선필요사항이 반복되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재발 방지 방안 기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개선 결과 보고 시 개선이 완료되어야 함)			
실무연락 책임자	부서명		직 위	
	성 명		연락처	
	FAX		E-Mail	

우리 기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07조제2항에 따라, 개선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또한, 제출된 개선계획은 기관 내 자체장비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 및 승인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제출서류 : 계정 제한 조치 결정 및 개선계획 승인 관련 자체장비심의위원회 회의록 1부.

년 월 일

연구개발기관장: (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 개선결과보고서

제출기관	기관명			
	대표자			
개선 요구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선 요구' 공문에 제시된 '개선 요구 사항' 기재			
개선계획-1 (계정 제한 조치)	조치 대상 계정	계정 제한 조치 대상 계정번호 기재		
	계정책임자	계정 제한 조치 대상 계정책임자 성함 기재		
	부과 조치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관리 매뉴얼 내 '기관 내부 개선 조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통합관리기관의 자체장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조치 기재		
개선계획-2 (재발 방지 방안)	동일 개선 필요 사항이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재발 방지 방안 기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개선 결과 보고 시 개선이 완료되어야 함)			
실무연락 책임자	부서명		직 위	
	성 명		연락처	
	FAX		E-Mail	

우리 기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07조제2항에 따라, 개선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또한, 제출된 개선계획은 기관 내 자체장비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 및 승인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제출서류 : 계정 제한 조치 결정 및 개선계획 승인 관련 자체장비심의위원회 회의록 1부.

년 월 일

연구개발기관장:

(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관리 매뉴얼

2026. 0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T Evaluation and Planning